

개방화시대의 석유정책방향

李 東 圭

〈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〉

1. 석유산업 관련제도 현황

가. 광범위한 정부 직접 통제

- 참입 제한
 - 석유 정제업의 허가
 - 석유 정제시설의 신설 · 증설 · 개조 허가
 - 석유 판매업(대리점, 주유소)의 허가
- 석유류 수출입의 승인
 - 원유 수입의 승인
 - 제품수입, 수출추천제 : 석유정제업자 및 대규모 직수입 소비자(한전, 석유화학업계)로 수입자를 한정, 국내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허용
 - 원유, LPG의 장기 운송계약 승인
- 석유제품 가격관리
 - 제품별, 유통 단계별 최고가격의 고시
 - 정유사 이익직접 관리 : 정유사 평균비용에 세후 자기자본 10%의 허용이윤 인정
- 조정명령 : 비상시 수급조정을 위한 직접 통제 가능
 - 석유정제업자의 유통부문 참여 금지

나. 정부 직접통제의 배경

- 정부 주도하의 석유산업 육성
 - 60년대 초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사업으로 출발
 -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정부의 투자 조정이 필요
 - 유류가격 안정 및 다국적 석유회사의 경영지배에 대한 대응 필요
 -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 물가 불

안요인의 제거

다.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

(긍정적인 측면)

- 국내산업의 육성을 통해 소비자 정체주의 정착
- 독과점 시장 구조하에서 부당가격 책정방지에 기여
- 등유, B - C유등 특정 유종의 저가유지로 산업 정책 및 민생안정대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
- 전국 균일가 유지가 가능

(부정적인 측면)

- 정부 고시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괴리현상이 불가피
 - 원활한 수출입 곤란→월동기 수급 불안요인 가중
- 산업의 경쟁유인 제공이 미흡
 - 정유사의 경우 경영합리화 노력이 미흡하여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주유소 설치시의 거리 제한등은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경쟁효과의 소비자 향유를 불가능하게 함.

2. 석유산업 규제합리화의 필요성

대내외 여건 변화로 규제 위주의 현행 석유산업 관련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

- 석유 소비패턴의 변화로 석유제품 수출입 규모의 확대 불가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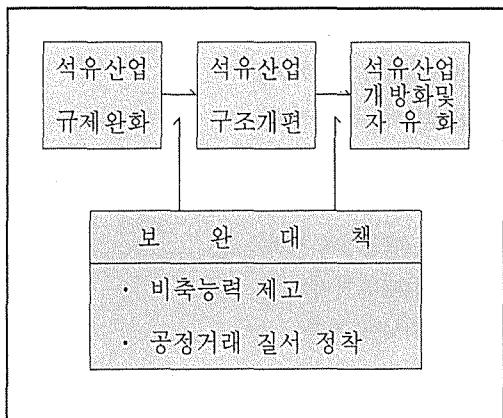
	1980	1985	1990
석유제품수입(백 만배럴)	13.9	24.6	100.4
(수입비율, %)	(7.6)	(13.0)	(24.6)

- UR서비스협상 등 대외 개방압력 가중
 - UR서비스협상 종결시 외국인에 대한 석유 유통업 및 수출입업 개방이 불가피
 - 자본 자유화로 석유 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
 - 특히, 국내 석유소비 증가로 산유국 및 메이저의 우리나라에 대한 하류부문 진출 욕구가 증대
-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개선이 시급
 - 대외 개방에 앞서 내국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촉진

3. 석유산업 규제합리화 방안

가. 기본 원칙

- 대외 개방에 앞서 석유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을 축소
 - '91년 UR 서비스협정 발효 전망, '92년 자본자유화실시등 대외개방시기에 부합되는 단계적 규제 완화조치추진
- 개방화 및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극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수립



- 자유화로 인한·비상시 대응능력 저하에 따른 대책 수립
- 산유국 및 다국적 석유 기업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책 마련

나. '91 주요 추진사항

- 1) 석유정체업자의 대외경쟁력 제고
 - 석유정체시설 증설 및 시설개조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
 -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시설 고급화 및 대규모화 유도
 - 석유수입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공급과 수입공급간의 경쟁을 촉진
 - 석유정체업자 외에 일반 수입업자에게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
 - 석유정체업 신규 참여는 석유가격 및 수입자유화가 정착된 후 허용 검토
 - 기간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경제전반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
- 2) 석유유통부문의 경쟁 촉진
 - 서울·부산등 대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
 - 정유사의 유통부문 참여 제한 조치 폐지
- 3) 석유가격 자유화
 - 석유제품의 가격규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유가체계의 국제화 도모
 -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적고 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제품부터 실시
- 4) 공정거래질서 확립
 - 상표표시제 실시
 - 가격 경쟁 효과를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쟁을 촉진
 - 공급자 담합등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
 - 「석유제품 거래질서 확립 지침(가칭)」 제정·실시
- 5)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
 - '96년까지 민간비축 30일분, '96년까지 90일분(정부 60일, 민간 30일) 비축 완려
 - 금년부터 민간비축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비축 수준을 상향 조정 ♦